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	410-523	(전화번호 362-3879)	제작주체	한 국의사당
처리기간		83. 8.	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
시행일자		83. 8.	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
보존연한		영구	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
보 조 기 록	부시장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임 명 장	부주금당관 제사장 용지개장	
	상하수국장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
	세수과장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	<i>[Large Handwritten Signature]</i>	
기안책임자		정철중 83.8.			
경 우			날	83. 8. 24	등
수 신	기안참조		고지	83. 8. 24	검찰
활 조			기록	83. 8. 24	
제 목	경계하천의 관리권 협의				
(제 1안)					
수신 내부결재					
제록 등 건					
1. 치수 410-40 (83.1.22) 호					
치수 417-167 (83.3.9) 호					
치수 410-247 (83.4.12) 호					
치수 417-653 (83.7.18) 호의 한강종합계획에 따른 협의사항과					
관련으로					
2. 한강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당시의 경제를 이루는 한강계곡					
1공구 및 10공구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와 수자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,					
경기도 치수 417-653 (83.7.18) 호로 당시에 협의 요청한 내용은 당초					
당시의 경로안과 일치 하므로					
3. 1공구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제6조 2항에 의하					
여 경계하천 관리권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10공구는 풍전과 같이 행정					

1205-25(2-1)A(감)  
1981. 12. 18 수신

정직 질서 창조

190mm × 268mm (인쇄물 2kg 60g/m<sup>2</sup>)  
초 달 청(1,500,000원 일 셈)

구역 경계에 따라 양지도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.

#### 가. 협의 구간

난지도 - 행주 대교군 구역 (별첨도면 참조)

#### 나. 협의 내용

협의구간에 대하여 하천법상 경기도 기사의 권한에 속하는  
제한 사항에 대하여 하루로는 당시에서 권리 의무를 부담.

#### 다. 기관

별도의 개별의사까지

첨부 관계도면 1부.

(제 2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수장과장

#### 제록 등 건

1. 당시의 한강종합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당시와 경기도간의 행정  
구역상 경계를 이루는 한강의 1, 10공구에 대하여 수 차례 관리문제를  
협의한 바

2. 10공구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양지도에서 행정부 역할 하여  
계속 관리도록 하고

3. 1공구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제16조 2항에 따라  
아래와 같이 관리권에 대한 협의를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#### 4. 협의 내용

##### 가. 협의구간

1안 3항의 가, 나, 다. 이기시행

첨부 관계도면 1부

(제 3안) 공고안

공고 제 호

주요검사	1980.1.6.재.226호
담당자	한국기장(법무 담당관)
날짜	1980.1.6.
인장	한국기장(법무 담당관)

경기 하천의 관리권 업무 공고

하천법 제12조 1항 제16조 2항에 의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 
의 행정구역상 경기 하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하천 관리권에 대한  
업무를 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.

아      헤

1. 하천명 : 한 강

2. 구 간 : 난지도 - 행주대교간 구역

3. 내 용 : 현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법상 경기도 지사 권한  
에 속하는 계단 사항에 대하여 하루오는 서울시  
에서 권역 의무를 부담.

4. 기 간 : 법도의 계정의시까지

1983. 8.

서      을      특      별      시      장

금      성      헤

(제4안)

수신 공보관

제목 관보 및 시보 개재 의뢰안

1. 법적 공고안과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는 경기 하천 관리권에

대한 업무가 있었기 관보,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공고안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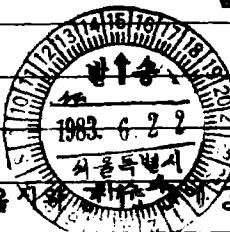
(제5안)

수신 경기도지사

참조 치수과장

제목 등 건

1205-25(2-2)(을)  
1981. 12. 18 수요



6-3

190mm x 268mm (인쇄용지 2장 80g/m<sup>2</sup>)  
조      달      청 (1,500,000에 인      채)

3

## 6-4

1. 치수 410-40 (83.1.22) 호

치수 417-167 (83.3.9) 호

치수 410-247 (83.4.12) 호

치수 417-653 (83.7.18) 호의 한강종합계획에 따른 협의사항  
과 관련으로

2. 한강종합계획에 따라 국도와 당시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계곡  
1공구 및 10공구 구간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그 도  
로 치수 417-653 (83.7.18) 호로 당시에 협의 요청한 내용은 당초 당시  
검토안과 일치 하므로

3. 1공구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제16조 2항에 의하  
여 경계하천 관리권을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10공구는 풍전과 같이 행정  
구역 경계에 따라 양시도에서 계속 관리하고자 하며

4. 법점과 같이 관보 및 시보에 게재하도록 조치하였고 건설부에  
도 국도와 협의 사항을 보고 하였음을 첨언 합니다.

아래

가. 협의구간

난지도 - 행주 대교간 구역 (법점도면 참조)

나. 협의 내용

협의구간에 대하여 하천법상 경기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 
제반 사항에 대하여 차후로는 당시에서 권리 의무를 부담.

다. 기간

법도의 재협의시까지

첨부 공고안 1부. 끝.



